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6

발의 연월일 : 2005년 12월 6일

발 의 자 : 최재옥 의원외 6인

□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각종 위원회중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를 도의 행정기구에 맞도록 혁신 분권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 관계법률 제정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1조)
-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분권과장으로 함.(안 제6조)
-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신행정수도”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관”을 “혁신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u>	<u>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 행정혁신, 균형발전, <u>신행정수도</u>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행정중심 복합도시</u></p>
<p>제6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기획관</u>이 된다.</p>	<p>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u>혁신분권과장</u>.....</p>
<p>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u>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수당 등)<u>위원회</u>에 「<u>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관 계 법령 발 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9.(생략)
10.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1. ~ 12.(생략)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9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혁신분권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둔다.

- ②~⑥ (생략)
- ⑦혁신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3. 15)
 1. 행정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시책 추진
 2. 민원행정제도 개선
 3. 지방분권·혁신지원 관련업무 총괄
 4. 시군 행정혁신지원계획 수립·시행
 5. 시군 혁신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혁신분권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7.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업무
 8. 지역혁신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9. 지역단위 혁신·분권 네트워크 구성·운영
- ⑧ (생략)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수당) ①각종 위원회(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